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17년 12월 7일

3. 제안이유

-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기구 조정>

- 명칭변경(안 제4장제3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축산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분장사무 조정>

- 기획관리실 소관사무 조정 및 이관(안 제6조)
 - (조정)행정의 창의·실용 등에 관한 사항 →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 (이관) 청년,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 : 행정국 → 기획관리실
- 행정국 소관사무 신설(안 제7조)
 - (신설)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행정국

5. 검토의견

- 위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행정국 소관 청년지원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행정국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총괄할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공동체 사업이라 함은 주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시민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충청북도가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부서가 없이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수행하여 사업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담당할 주무부서 신설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되어 위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가 담당하게 될 지역공동체 사업의 범위, 팀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붙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